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60451(본소), 2021가단75552(반소) 판결
[제3자이의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김진석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20. 3. 10.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위 당사자 사이의 2021카정70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1. 1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8증43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20. 11. 16.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8. 14. D과 사이에 1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8년 증제43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20. 3. 10. D 사이에 D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

채무자 D은 채권자 원고에게 시흥시 F, G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건물 및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의 아래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한다.

채무내역

2015. 5. 29. 30,000,000원

2017. 7. 26. 20,000,000원

2017. 11. 22. 26,000,000원

총액 76,000,000원

상기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 원고에게 건물 및 지상권 권리를 위임한다. 단 채무변

제시까지로 하고 상기금액에 대한 이자는 1%로 지급한다.

[별지목록]

1. 건물: 축사 약 100평, 살림집 약 50평, 직원숙소 약 10평, 사무실 약 6평
2. 기계: 이 사건 기계
3. 야적자재: 자재 및 고철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20. 11. 16. 이 법원 H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라. 한편, D은 2020. 3. 10.경 이 사건 기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

원고는 D에 대한 위 76,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참조),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이상, 이 사건 기계는 취소채권자인 피고와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서 채무자인 D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것이므로(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본소 주장은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그 취소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특성과 모순판결의 회피 및 소송경제의 원칙에 비추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반소로서 본소와 같이 심리, 판단되는 경우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한 바와 같이, D은 피고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이 사건 기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를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으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피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별지